서울특별시서초구의정회
설치및육성지원에관한조례안재의요구안

의안 번호	2-1

제출연월일 : 2001. 10

제 출 자 : 서초구청장

1. 의결주문

서울특별시서초구의정회설치및육성지원에관한조례안재의요구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조례제정경위

- o 발 의 : 총무재무위원회
- o 의 결 : 제11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01. 10. 16)
- o 우리구 이송 : 2001. 10. 16
- o 재의요구기한 : 2001. 11. 5

3. 조례안 주요 골자

- o 의정회는 의회의 전임의원 및 현임의원으로 구성하며 사단법인으로 한다. (안 제2조)
- o 지방자치제도의 발전 개선과제 등 서울특별시서초구 의정회가 추진하는 사업과 의정회 활동에 소요되는 경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함. (안 제3조)
- o 의정회는 매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 구청장에게 제출 승인받도록 규정함. (안 제4조)
- o 의정회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때에는 세입·세출결산보고서에 당해연도의 사업실적을 첨부하여 다음연도 3월말까지 제출하도록 규정함. (안 제5조)

4. 재의 요구 사유

- o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를 의결하고자 할 때에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을 듣지 않은 것은 위법임.**
  - 안 제3조(사업과 보조금의 교부)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은 의정회기

추진하는 사업과 의정회 활동에 소요되는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라고 규정한 부분은 **지방자치법 제123조**(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제정 등) "**지방의회가 새로운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나 안건을 의결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에 위반한 것으로 위법임.

o **구청장의 사업계획서 및 수익사업 승인은 위법임**

- 안 제4조(사업계획의 제출·승인) "사업계획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도록 규정한 부분과 동조 제2항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한 부분은 사업계획서 제출부서 및 수익사업의 승인부서는 **『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제12조제2항과 동법 제4조제3항』** 및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제24조제3항』에 의거 행정자치부장관으로부터 위임**되어 있어 사업제출 및 승인부서는 **서울특별시장**으로 구청장의 사업계획서 및 수익사업 승인은 위법임.

o **임의 보조단체에 대한 예산보조를 규정한 조례는 부당함.**

- 임의보조를 내용으로 하는 조례를 제정하여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보조를 요구하는 것은 **지방자치법 제118조 및 지방재정법 제30조**를 위반한 것임.

o **보조금교부는 지방재정법에서 규정한 보조금지급 취지에 반함.**

-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관한법률 제4조(사단법인의 허가기준)**에서는 『회비·기부금 등으로 조성되는 재원의 수입으로 목적사업을 원활히 달성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허가한다』라고 규정하여 회비와 기부금 등이 사단법인의 기본 재산임.
- 지방자치 단체의 보조금 지급대상은 **지방재정법 제14조제1항제4호, 동법 시행령 제24조제2항**에서 규정한 "그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으로서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그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이므로, 사단법인인 의정회는 회비·기부금 등의 재원이 주가 되므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서 보조금 교부를 규정하는 것은 지방재정법에서 정한 보조금 지급 근본 취지에 어긋난다고 판단됨.

5. 참고사항

가. 재의 요구 관련 법령

o **조례제정 - 조례제정 대상이 아님**

- 관련근거법 : 지방자치법 제123조(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제정등)
  지방자치법 제9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지방자치법 제15조(조례)

o **보조금교부 - 위반될 소지가 있음**

- 관련근거법 : 지방재정법제2조(재정운영의 기본원칙)같은법 제14조 제1항제 4호(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
  단)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지급대상은 지방재정법제 14조 및 같은법 시행령제24조에 의거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그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으로서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그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는 예외

※ 의정회 등 유사공익법인 설립시 보조금 교부는 재정운영의 기본틀이 무너질 우려가 있음.

o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를 의결하고자 할 때에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을 듣지 않은 것은 위법임.**

- 관련근거법 : 지방자치법 제123조(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제정 등) "지방의회가 새로운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나 안건을 의결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에 위반한 것으로 위법임.

o **재의 요구 이유에 대한 관계법령 : 별첨**

나. 서초구의회 이송 조례안 : 별첨

서울특별시서초구의정회 설치및육성지원에관한조례안재의요구안

2001년 10월 16일자로 서초구 의회로부터 이송되어온, 서울특별시서초구의정회 설치및육성지원에관한조례안재의요구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의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19조제3항 및 동법 제9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의를 요구합니다.

1.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를 의결하고자 할 때에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을 듣지 않은 것은 위법임.**
   - 안 제3조(사업과 보조금의 교부)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은 의정회가 추진하는 사업과 의정회 활동에 소요되는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라고 규정한 부분은 **지방자치법 제123조(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제정등) "지방의회가 새로운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나 안건을 의결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에 위반한 것으로 위법이며,
   -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지급대상은 지방재정법 제14조, 동법 시행령 제24조 그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으로서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그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이므로, 공익법인인 의정회는 회비·기부금 등의 재원이 주가 되므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서 보조금 교부를 규정하는 것은 지방재정법에서 정한 보조금 지급 근본 취지에 어긋남
2. **구청장의 사업계획서 및 수익사업 승인은 위법임**
   - 안 제4조(사업계획의 제출·승인) 중 **사업계획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도록** 규정한 부분과 동조 제2항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한 부분은 사업계획서 제출부서 및 수익사업의 승인부서는 『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제12조제2항과 동법 제4조제3항』 및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제24조제3항』에 의거 행정자치부장관으로부터 위임되어 사업제출 및 승인부서는 **서울특별시장**으로

구청장의 사업계획서 및 수익사업 승인은 위법임.

3. 임의 보조단체에 대한 예산보조를 규정한 조례는 부당함

- 임의보조를 내용으로 하는 조례를 제정하여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보조를 요구하는 것은 지방자치법 제118조 및 지방재정법 제30조를 위반한 것임.

4. 사단법인의 기본 재산은 회비와 기부금임

- 안 제2조 **의정회는 의회의 전임의원 및 현임의원으로 구성하며 사단법인으로 한다라고** 규정한 조문은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관한법률 제4조(사단법인의 허가기준)**에서 『회비·기부금 등으로 조성되는 재원의 수입으로 목적사업을 원활히 달성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허가한다』라고 규정하여 회비와 기부금이 사단법인의 기본 재산임.

첨부자료 : 관계법규 발췌문

서울특별시서초구의정회설치및육성지원조례안

제1조 【목 적】 이 조례는 바람직한 지방자치제도의 발전 및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의 발전과 서울특별시 서초구민의 공공복리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조사 연구할 서울특별시 서초구의정회(이하 "의정회"라 한다)의 설립과 보호,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구성 및 설립 운영】 ①의정회는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의 전임의원 및 현임의원으로 구성한다.

②의정회는 사단법인으로하며,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설립 등기를 함으로써 성립된다.

③의정회의 설립, 육성운영에 관한 사항은 관계법령과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 【사업과 보조금의 교부】 ①의정회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지방자치제도의 발전 개선과제 및 구의회 발전 방안에 대한 조사 · 연구
2. 서울특별시서초구의정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정책의 연구개발과 의정홍보
3.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회복지문제, 환경문제, 교통문제, 등 복지증진 방안의 연구
4. 기타 위 각 호에 부수되는 사업과 의정회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의정회가 추진하는 사업과 의정회 활동에 소요되는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제4조 【사업계획의 제출·승인】 ①의정회는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 그 승인을 득 해야 하고, 구청장은 그 승인 내용을 서울특별시서초구의정회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 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②의정회는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의정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제5조 【결산보고 등】 ① 의정회는 구청장으로부터 보조금을 교부받은 때에는 매 회계연도의 세입·세출 결산보고서에 당해 년도의 사업실적을 첨부하여 다음 년도 3월말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규정한 세입·세출 결산보고서는 의정회 정관에 정한 감사보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6조 【잔여 재산의 귀속】 의정회가 해산하는 경우에 잔여 재산의 처분은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1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7조 【운영 규정】 의정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 및 의정회 정관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의정회 회장이 따로 정한다.

제8조 【 준 용】 보조금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서울특별시서초구 보조금관리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